

답변서

사 건 2020재나32 기타(금전)

[담당재판부:제19민사부]

원 고 임 그 류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 해 관

인격 권리가 무시당하면 사회적약자라도 법원 판결로서 보호하는 법원이 되기를 바라며 이 답변서를 제출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처음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 노동조합에 “신분보장기급 사용내역”을 알려고 사실조회신청서 냈습니다. ⇒ 성남민사법원(2007가합

3175)으로 이송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행정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을 관할권이 없는 민사법원으로 이송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묵살 했습니다.

2. 2007가합3175판결문 ”이유 2. 이 사건 적법 여부의 판단 나.“ 부분에 ”법률에 명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유로 각하판결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법원 때처럼 ‘청구취지’는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이며 신분보장기금 사실조회서도 다시 냈습니다.

민사법원에서도 행정법원 때 주장 그대로 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1조”에 의하면 전속관할 위반은 언제나 이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법원으로 이송 판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맷음

①. 해당되는 법 조항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9조(사법행정사무)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① 확정판결(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기판력)을 가진다.
-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2007가합3175판결문에 각하 이유로 신분보장 기금 사실조회 한 것 통보 없는 설명이 없어서 이해 안 되었습니다. 또 관할법원이 어디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에는 판결문에는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2007가합3175판결문은 관할법원이 어디라고 알고 있는 법 전문가들은 알 수 있어도 법을 몰라서 법률공단에서 상담하여 소장을 냈었고 민사 법원에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여 행정법원 때처럼 주장했는데 각하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각하 이유를 몰라 답답했습니다.

② 무료로 해준다는 변호사님에게 처음 사건 번호는 알아야 한다며 연락 했을 때 소장을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인쇄한 것 5장. 첨부) “청구취지”는 “1. 원고에 대한 2003. 7. 15. 자 해고는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 상 불이익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입니다.

□ 제가 주장한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천만원 달라고 한 것은 제 의견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피고는 인터넷 노조제시판에 불량 글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하는데 “징계사유통보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징계사유 통보서 : 갑 제12 호증” 제출 안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인터넷제시내용) : 갑 제14호 증 총52장” 보면 심한 것은 모른 척 하고 경미한 것도 다 포함하여 저 혼자에게만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장 안했습니다. (이런 걸 몰랐습니다. 이유는 원고의 준비서면 참고) 또, 항소 한다고 해도 안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용어사전에 있는 ‘착오’는

“행위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법률용어사전에 있는 ‘강박’이란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위협의 종류는 사람이 공포를 야기시키는 것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어 알지 못했고 제 의사가 아닌 것은 취소가 가능

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 합니다.

◎.결론

상식은 법규를 탐지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라 원고는 법규를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판할 법원이 아닌 곳에서 다루어 더욱 더 억울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증명하면 사회정의와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 반했습니다.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진실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첨부 : 성남지원 2009가합9702 소장 5장.

2020. 5. .

재심원고 임 그 루

고등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한통사택 A동 103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형 동, 장 진 영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층 103호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 구 현

신분보장 받을 권리 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한 2003. 7. 15. 자 해고는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피고는 1982년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으로 2003.

7. 15. 해고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2. 이 사건 청구의 경위

원고는 1978. 10. 2. 체신부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1997. 9. 8.경부터 주식회사 케이티(KT) 산하의 상주전화국 시설운용부 고객시설과 전용 회선 운용실의 통신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3. 7. 15.경 위 회사로 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습니다(갑 제1호증, 징계처분사유설명서 참조).

이에 원고는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면서 2006. 7. 26. 피고의 규약 제 12조, 신분보장규정 제5조에 터잡아 피고에게 신분보장기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는데(갑 제2호증 규약, 갑 제3호증 신분보장규정 참조), 피고는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하는 신분보장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6. 8. 3.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해임되어 신분보장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위 신분보장기금청구서를 반려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신분보장규정 제8조, 갑 제4호

증 신분보장기금청구서 반려 참조).

피고의 반려에 대해 원고는 2006. 8. 31.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으나(갑 제5호증, 내용증명서 참조)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7.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조합활동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청구를 하였으나(2007가합3175) 동 법원은 2008. 8. 8. 위 철회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 그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3. 조합 활동으로 인한 희생

원고는 그동안 소외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해 업무와 관련한 민원제기 등으로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갑 제6호증, 1997. 9. 아침을 여는 소리 참조). 이로 인해 소외 회사의 눈 밖에 나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결근하거나 외출을 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행위가 회사의 내부절차규정에 반하여 무단결근이나 무단조퇴로 평가되어 원고는 해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피고의 노동조합 규약 제12조 제1항에는 “**조합원이 규약 및 제 규정에 의한 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신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규약 참조).

원고가 회사에 적극적 이의제기를 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행위는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해고라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위 규약을 적용하여 신분보장을 해 주어야 합니다.

4. 결론

위와 같이 원고에게는 피고로부터 신분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신분보장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로부터 신분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 | | |
|-----------|--------------------|
| 1. 갑 제1호증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 1. 갑 제2호증 | 규약 |
| 1. 갑 제3호증 | 신분보장규정 |
| 1. 갑 제4호증 | 신분보장기금청구서 반려 |
| 1. 갑 제5호증 | 내용증명서 |
| 1. 갑 제6호증 | 1997. 9. 아침을 여는 소리 |

첨 부 서 류

- | | |
|-------------|----|
| 1. 위 각 입증방법 | 1통 |
| 1. 위임장 | 1통 |
| 1. 소장부본 | 1통 |
| 1. 법인등기부등본 | 1통 |
| 1. 송달료 납부서 | 1통 |

2009. 7.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형 동

장 진 영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